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7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해철 · 채현일 · 전은수
임호선 · 이재강 · 김남희
임오경 · 김원이 · 박 정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청은 이와 같은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발하거나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금지·제한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현행 수도법상 처벌 수위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낮은 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더라도 재차 처벌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재조치의 실효

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수도법상 법정 최고형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이하의 과징금 및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시설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그 전제가 되는 조치명령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하거나,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 신설).
-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투기 금지 규정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제1호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조치명령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의5(이행강제금)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를」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과징금)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81조제1호 및 제83조제1호에 따른 벌금 또는 제8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1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제83조제1호 중 “자”를 “자(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8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7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 및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행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부터 행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행한 위반행위로 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의4(조치명령 등)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u>

<신 설>

에 따라 그 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의5(이행강제금) ①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돼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

<신 설>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6(과징금) 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u>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81조제1호 및 제83조제1호에 따른 벌금 또는 제8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u> <u>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u> 제81조(벌칙) ----- -----
---	---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생 략) 2. (생 략)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u>자</u> 1의2. ~ 11. (생 략) <u><신 설></u>	----- -----. 1. <u>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u>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83조(벌칙) ----- ----- -----. 1. ----- ----- <u>자(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 1의2. ~ 11. (현행과 같음) <u>제88조(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별) 제8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7조의6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u>
--	--